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35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355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2가단53599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호

변론 종결 2024. 10. 11.

판결 선고 2024. 11.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2가단535998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서울 종로구 D 도로 59.6m² 중 596분의 89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2. 7. 21. 접수 제257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및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줄의 "1/4에"를 "약 1/4에"로, 제5쪽 제3행의 "G"을 "F"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지시어 포함).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9549)에서 C로 하여금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목적물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이고,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와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목적물은 '이 사건 지분'이다. 따라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와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와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의무를 이행불능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일물일권주의 원칙하에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서 수인(數人)에게 속하는 것을 공유(共有)라고 하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지분이라 하는바,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을 수인의 소유자에게 분할하는 비율을 말한다. 위와 같이 지분은 1개의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관념적으로 분할된 비율인바, 이 사건 매매와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의 관념적 분할 비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인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하여도 그 관념적 지분 비율만큼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밖에 없다.

다) 나아가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 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 한다 해도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유 부분'만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선행 사건의 결과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C는 대한민국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의 보존등기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까지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인용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원고의 패소로 끝날 것이 확실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1) 2) 판단 그러나 피고가 언급한, C가 대한민국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5가단198031)은, 지적도에 등재된 공간적 범위는 이 사건 점유 부분과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점유 부분과 중복적으로 신규등록이 이루어져 '서울 H 대 818.7m²' 중의 일부가 된 부분을 소송목적물로 한 것인바, '서울 D 도로 59.6m²' 중의 일부분인 이 사건 점유 부분과는 별개의 목적물에 대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립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의진

판사김양훈

판사정인재

1)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다.